

	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위원회규정 <small>[제목개정 2021. 1. 1]</small>	제 정 일	2016. 2. 1
		개 정 일	2021. 4. 1
		개정차수	3차
		담당부서	교수학습지원센터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21. 1. 1)

제 2조 (정의) 비교과 교육과정이란 대학의 정규교육과정 이외 대학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육프로그램과 학생활동을 총칭한다. (개정 2021. 1. 1)

제 3조 (조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이 되고, 간사는 교수학습지원센터 책임교수가 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교양교육센터장, 학생생활상담센터장, 창업교육센터장, 어학교육원장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18. 4. 1)

제 4조 (임기)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할 수 있다.

제 5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의 각 사항을 심의한다.

①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(개정 2021. 1. 1)

② 비교과 교육과정 질 관리에 관한 사항 (개정 2021. 1. 1)

③ 비교과 교육과정 계획과 개발에 관한 사항 (개정 2021. 1. 1)

④ 학생이력관리시스템 및 마일리지 관리·조정에 관한 사항 (신설 2021. 4. 1)

⑤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 6조 (회의소집 및 의결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7조 (운영)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·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